

1. 개정이유

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, 교육정원은 한정되어 있어 교육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인 바, 교육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유효기간을 조정(안 제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한국교통안전공단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
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3년”을 각각 “1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대상에 대한 적용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로 최초로
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고한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
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
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교육대상)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,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(이하 “교통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교육 수료일로부터 <u>3년</u>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</p> <p>3. 교육 수료일로부터 <u>3년</u>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교육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1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